

기본소득을 말하는 한국교회: 성취와 남은 토론거리

이건민

계간 《기본소득》 편집위원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기본소득에 대한 신학적, 사회과학적 논의를 집대성한 책이 나왔다. 『한국교회, 기본소득을 말하다: 기본소득에 관한 신학과 사회과학의 대화』(정미현, 강원돈, 곽호철, 김유준, 김회권, 야닉 판데르보흐트 Yannick Vanderborght, 전강수, 정용한 저, 정미현 책임편집, 새물결플러스, 서울, 2022)가 바로 그것이다. 2020년에 『시민기본소득: 기독교적 사회정책』(토리, 2020)이라는 책이 출간된 바 있지만, 이는 외국 학자가 쓴 책을 번역한 것이었다. 필자가 알고 있기로 국내에서 교회와 기본소득의 관계를 다룬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는 강원돈 교수의 2010년 논문 “기본소득 구상의 기독교윤리적 평가”(『신학사상』 150, 177-215)이니, 그로부터 근 12년 만에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한 전문서가 나온 셈이다.

이 책은 총 5장과 부록(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기독교인의 기본소득 인식 설문조사”에 관한 결과 보고서)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연구의 방법과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제시한다. 2장인 “기본소득에 관한 성서적 근거와 함의”에는 김회권의 “기본소득의 두 토대: 자연법과 구약성서”와 정용한의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바라본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살후 3:10)을 위한 성찰”이라는 두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3장인 “기본소득에 관한 역사적 윤리적 여 성신학적 고찰”은 세 논문으로 구성되는데, 김유준의 “루터와 칼뱅의 경제사상으로 보는 기본소득: 희 년 사상을 중심으로”, 광호철의 “기독교윤리의 시각에서 본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방향성: 타자윤리학 을 중심으로”, 정미현의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여성신학적 성찰”이 바로 그것이다. 4장인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사회윤리적 제안과 사회과학적 고찰”은 세 논문, 곧 강원돈의 “생태학적 지향의 기본소득 에 관한 사회윤리적 구상: 국민경제 수준의 소득 분배 계획에 바탕을 두고서”, 전강수의 “좌우파 기본 소득 모델과 변동형 기본소득제”, 야닉 판데르보흐트의 “아웃사이더 친화적인 정책?: 부분적 기본소득 과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화 완화”로 이루어져 있다. 5장인 결론에서는 연구의 성과를 요약하고 한국교 회를 향하여 몇 가지 중요한 개선 혹은 개혁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부록의 앞부분은 설문조사의 배경, 목적, 설계, 내용, 응답자 특성 등 설문조사의 개요를 제시하였으며, 뒷부분은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 신 앙적 성향에 따른 기본소득에 대한 태도, 기본소득 도입 여부와 자원 마련, 신앙적 견해에서 본 기본소 득 도입 여부 등을 중심으로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2-4장에 있는 여덟 논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2장의 첫 번째 논문인 “기본소득의 두 토대: 자연법과 구약성서”에서 김희권은 기본소득의 최초의 주창자인 토마스 페인(Thomas Paine)과 토마스 스펜스(Thomas Spence)에게서 토지의 만민 귀속 및 만민 향 유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법적 토지 사상이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페인이 “특정 개인의 토지 소유권은 토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가 토지를 경작하거나 개량한 부분에만 한정”되며, 그러므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절대적 순수 사유자로서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기초 지대 ground-rent’를 사회에 지불해야” 한다고 보았음을 강조한다(54면). 또한 그는 페인이 “토지란 만인의 공동 재산인 만큼 그 토지로 인한 이익의 상당 부분은 사회 구성원 전체가 나눠가져야 하며 따라서 그 것은 유력자가 열등자에게, 혹은 국가가 인민에게 시혜적으로 베푸는 인위적 공여물이 아니라 땅에 태 어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누려야 할 자연적 권리”라고 생각했음을 역설한다(56면). 여기서 더 거슬러 올라가 그는 모세 오경의 땅 선물 신학은 이러한 자연권 사상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본소득의 성서적 토대로 제시한다. 저자는 “성서는 야웨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토지 소출의 향 유권을 보편적으로 누리도록 규정”하며 “레위기 25:23(땅은 하나님의 것!)과 신명기 15:11(어느 누구 도 토지 소출의 향유에서 배제되면 안 된다)은 성서에 나오는 기본소득 사상의 대헌장과 같다”고 주장 한다(59면).

2장의 두 번째 논문인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바라본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살후 3:10)을 위 한 성찰”에서 정용한은 성서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적 전제로서 본문과 관련한 세 가지 세계, 곧 폴 리 쿠퍼가 제안한 본문 뒤의 세계, 본문 안의 세계, 본문 앞의 세계를 채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3:10(“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에 대한 성찰을 시도한다. 데살로니가후서 3:10 뒤의 세계를 살펴보면, 당시 바울 공동체 내에서 상당수의 교회 및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 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초기 교회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분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을 도왔다는 사실, 친로마적 분위기가 팽배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과 우려를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데살로니가후서 3:10 안의 세계를 들여다보 면, 바울 스스로가 교인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스스로 일하고자 했으며 자비량과 후원은 필요에 따

라 선택적으로만 사용하고자 했다는 점, 모금을 통해 부족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신앙인으로서의 연대와 공동체성을 높이고자 했다는 점, 초기 교회가 임박한 종말의 기대 속에서도 빈민 구제에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권면은 개인의 태도를 문제시하거나 고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교회의 경제적 부담과 교회에 대한 사회적 오해를 염려하면서 교회의 공동체성과 안정성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드러난다. 데살로니가후서 3:10 앞의 세계를 보면, 심화되고 있는 노동의 소외와 불안정성, 취업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조건 하에서 비자발적 실업과 자발적(?) 구직 포기 만연, 기계(로봇)가 노동을 대규모로 대체할 것이라는 위기감의 팽배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은 노동 본연의 회복, 즉 자아실현으로서의 노동, 자신에게 걸맞는 자유로운 선택에 기반한 활동으로서의 노동을 가능케 하는 대안을 요구하고 있음이 명백해진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맥락에서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는 우리 시대의 대안으로 떠오른다. 저자는 이를 바탕으로 “데살로니가후서 3:10의 가르침은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근거 본문으로 여겨지기보다 한국 사회의 경제적 주체성, 공동체성, 대체성을 한 번 더 고민하게 하는 본문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103-104면).

3장의 첫 번째 논문인 “루터와 칼뱅의 경제사상으로 보는 기본소득: 희년 사상을 중심으로”에서 김유준은 루터와 칼뱅의 경제사상에서 희년 사상에 토대한 지공주의적 요소를 발견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상이 토지세를 비롯한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한 기본소득 지급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시한다고 역설한다. 저자는 루터가 “십일조를 최상의 지대zinß로 보면서 1/10로 한정하지 않고 창세기에 언급된 요셉의 예를 통해 1/5까지도 가능하다고 보면서 만사가 형통하면 지대의 1/5이 적당한 액수”라고 했음을 환기시키면서(134면), 루터의 희년 사상이 기본소득의 여러 자원 중에서 토지세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는 칼뱅이 “상품의 소유권은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것이라고” 보았으며 “재산이 사회적 억압의 근거로 탈바꿈하지 않도록 일정한 연한이 되면 땅을 재분배하고 채무를 변제해주는 일을 제도화한 고대 유대의 법, 즉 희년법 사상을 인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142면), “희년의 원리에 기초한 칼뱅의 지공주의적 경제사상은 기본소득을 제도화하고 토지세를 비롯한 각종 불로소득 환수의 강화를 통하여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사상적 근거를 제시한다”고 주장한다(143면).

3장의 두 번째 논문인 “기독교윤리의 시각에서 본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방향성: 타자윤리학을 중심으로”에서 곽호철은 기독교에 대한 한국 사회의 비판적 평가를 검토하고, 기독교의 본래적 가르침이 약자를 위해 부와 재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논증하고, 타자윤리학을 통한 기독교적 기본소득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있다. 그는 “기본소득의 바탕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다고 전제한다면, 현실 기독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 인식과 기본소득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소극적 태도는 현재 기독교가 성서와 기독교 전통의 가르침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진단한다(159~160면). 그리고 “기독교는 약자에 대한 경제적 도움을 소유권을 제한하면서까지 요청해왔”다는 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통은 특별히 소유의 나눔에 대하여 오늘날 교회의 인식보다 더 근본적인 타자중심성을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160면). 저자가 볼 때, 기본소득은 선택적 복지에 비해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 잘 도울 수 있고 성서의 가르침에 더 부합한다. 첫째, 선택적 복지에서는 행정적 사각지대가

광범하게 존재하는 데 비해 기본소득에서는 행정적 사각지대가 없다. 둘째, 선택적 복지와는 달리 기본 소득은 수혜자에게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주지 않는다. 셋째, 선택적 복지가 노동 의욕을 크게 감소시키는 반면, 기본소득은 그렇지 않다. 끝으로 그는 Van der Veen and Van Parijs(1986: 648[2006: 17])에 나오는 래퍼곡선과 기본소득 지급 수준에 관한 그림을 제시하면서, 타자윤리학을 통한 기독교적 기본 소득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판 데어 빈과 판 파레이스가 제시한 네 기준, 곧 (1)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의 기본욕구를 충족하는 지급 수준이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성장지향형 기준, (2) 지속가능한 최대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롤스주의적 기준, (3) 기본소득이 모든 사람의 기본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지급 수준이어야 한다는 조건 하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자유의 왕국”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맑스주의적 기준, (4) 기본소득 지급 수준이 (2)와 (3) 사이에 놓임으로써 (2)에 비해서는 형평성을 더 고려하고 (3)에 비해서는 효율성을 더 고려한 평등지향형 기준 중에서, 저자는 (3)이 (2)에 비해서 비록 기본소득 지급수준과 선택할 자유의 질 면에서는 더 낮지만 자아실현을 위한 자유의 질 면에서는 더 높으므로 기독교적 시각에서 더 우월한 기본소득 분배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타자에 대한 책임적 자세를 요청하는 타자윤리학적 시각에서 보자면, (2)와 (3) 사이에서 (3)에 가까워지도록 지향함으로써 개인의 실질적 자유를 최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3장의 세 번째 논문인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여성신학적 성찰”에서 정미현은 기본소득이 기존의 불평등한 노동 구조와 문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기본소득 담론과 개혁주의적 기독교 사상 사이에 연결점이 발견되며, 여성신학적 시각에서 기본소득이 지지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하나님 은혜의 보편성, 노동윤리의 기반으로서 은사, 생명과 살림을 중심으로 한 신학과 경제학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개혁신학적 패러다임 전환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기본소득이 경제적 불평등 감소에 기여하고, 무급 혹은 저임금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되며,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노동시간 유연화를 촉진함으로써 은사에 따른 여성의 사회 참여를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따라서 개혁주의적 기독교 사상과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기본소득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4장의 첫 번째 논문인 “생태학적 지향의 기본소득에 관한 사회윤리적 구상: 국민 경제 수준의 소득 분배 계획에 바탕을 두고서”에서 강원돈은 생태계와 경제계 간 에너지-물질 순환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사회 정의와 생태학적 정의의 관계를 논하고, 국내외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린 뉴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 경제 수준의 소득 분배 계획을 토대로 생태학적이고 사회적인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생태학적 정의와 사회 정의가 상호 긴밀히 결합되어 있으며, 경제계와 생태계 간 에너지-물질 순환 관계에서 볼 때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자본의 무한한 이윤 추구로 인해 자본주의 경제에서 일반화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는 자원의 고갈과 생태 위기를 일으키는 동시에 사회적 가난도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생태학적 정의와 사회 정의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태학적이고 사회적인 경제민주주의를 기초로 자본과 노동의 민주적인 파트너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자본 축적 및 팽창 기제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생명체와 무생물체들이 생태계의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네트워크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신의 자리에서 현존할 권리를 인정하고, 그와 같은 ‘자연의 권리’를 주장하는 주체를 법률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36면). 또한 그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지에서 추진되는 ‘그린 뉴딜’ 또는 ‘그린 딜’ 기획이 기본적으로 녹색 케인즈주의에 기반하여 자본주의적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문제와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은 채 국가의 신용 창출에 주로 기

대고 있다는 점, 그리하여 자본주의 경제를 지지할 정도의 탄소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고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 경제 수준의 생태학적이고 사회적인 소득 분배에서 핵심은 생태계, 노동, 자본 사이에서 자본의 잉여가치를 적절히 분배하는 문제라고 보며, 이를 “생태계로부터 에너지와 물질을 경제계로 끌어들이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알맞은 형태로 변형시키는 생산에 대한 자본 투입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생태계와 사람의 생명과 복지를 돌보기 위한 자본 투입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집약한다(249면). 소득 분배의 이러한 기본 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자본 축적의 상당한 몫을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확보하는 것(예컨대 GDP의 6%), ②전체 잉여가치 중 생태계의 몫을 제하고 남은 부분을 국민경제 차원에서 생산과 소비의 거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배분하는 것(차선책으로는 자본에 귀속된 몫의 일부를 노동의 몫으로 이전하는 소득재분배 과정을 수립하는 것), ③잉여가치에서 노동과 가계에 귀속된 몫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일부는 개인에게 충분한 액수의 기본소득으로 분배하고, 나머지는 시장임금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저자는 “기본소득 제도는 국민 경제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본격적인 소득 분배의 틀이 마련되어야 제대로 설게될 것”이며, “그것은 국민 총생산을 생태계의 몫, 미래를 위한 저축, 자본의 감가상각 비용, 임금 소득, 기본소득 등 다섯 개의 큰 항목으로 알기 쉽게 나누고 그 비율을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역설한다(263면).

4장의 두 번째 논문인 “좌우파 기본소득 모델과 변동형 기본소득제”에서 전강수는 지금까지 제출된 기본소득 모델을 판 빠레이스로 대표되는 실질적 자유 보장을 추구하는 좌파 기본소득 모델, 밀튼 프리드먼Milton Friedman으로 대표되는 빈곤갭 형태Poverty Gap Type의 음의 소득세를 선호하는 우파 기본소득 모델, 토마스 페인, 토마스 스펜스, 헨리 조지Henry George로 대표되는 지공주의에 입각한 정통파 기본소득 모델로 구분하고, 좌파 기본소득 모델에 기초한 고정액수 제시형 기본소득제의 오류를 지적하며, 그 대안으로 정통파 기본소득 모델에 기반한 변동형 기본소득제를 제안한다. 저자는 충분한 액수를 강조하는 좌파 기본소득 모델이 “‘정당한 자원 발굴 → 예상 수입 계산 → 1/n씩 분배’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기본소득 지급 목표액 설정 → 소요 예산 계산 → 활용 가능한 자원 확보’의 순서를 따라 모델”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순서를 역으로 밟아 계산하는 셈”이며, 따라서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고 비현실적일뿐더러 정책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275면). 우파 기본소득 모델에 대해서는 양의 소득세 부분을 무시하거나 경시하고 있다는 점,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 간 경제학적 동등성 조건을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도외시키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비판하고 있다. 그는 기본소득의 액수보다 정당한 재원을 앞세우는 정통파 기본소득이야말로 논리적으로 더 정당하며 사회적인 수용성을 확보하기에도 더 용이하다고 본다. 아울러 기본소득 연계형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 연계형 탄소세와 같은 정통파 기본소득 모델에 기반한 정책이 실제 도입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을 복지정책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특정 시점에서 기본소득이 고정된 액수로 미리 제시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4장의 세 번째 논문인 “아웃사이더 친화적인 정책? 부분적 기본소득과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화 완화”에서 야닉 판데르보흐트는 노동시장의 ‘인사이더’(표준적 고용관계에 속한 정규직 노동자)와 ‘아웃사이더’(실업자 또는 낮은 수준의 임금, 보호, 혜택, 사회보장을 누리는 노동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소득과 양질의 고용복지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기본소득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 경제력을 분산시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자유를 제고하며, 각자가 자신에게 맞는 ‘좋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물질적 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그는 완전기본소득보다는 부분기본소득이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자발적인 노동시간 감축을 위한 보조금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 인적자본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구하는 아웃사이더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부분기본소득이 특히나 아웃사이더들의 노동과 삶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논증한다. 아울러 부분기본소득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양질의 구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향후 토론을 위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부자나 정치공동체의 가난한 사람에 대한 부조의 의무로부터 기본소득을 끌어내려는 시도와 관련한 것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시도 자체가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논하기보다는 필요성에 기반한 논변이라는 점, 빈곤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다른 대안들과의 비교와 경합 속에서 치열한 토론대상이 된다는 점, 그러므로 우리에게 추가적인 논증 부담을 요구하는 논변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우선 금민(2020b)이 잘 지적하고 있듯이, “현재의 법률적 소유관계가 어떠하든지 대지와 자연물은 원래 모두의 것이라는 개념”을 의미하는 ‘원천적 공유’로부터 공유부배당으로서의 기본소득이 곧바로 이끌어지는 것은 아니다(37~38). 토마스 페인 이전의 사상가들은 원천적 공유 개념에서 부자나 정치공동체의 가난한 사람에 대한 부조의 의무만을 끄집어냈을 뿐이다(금민, 2020b: 38). 물론 여기서 3장 두 번째 논문에서 곽호철이 제시한 바와 같이, 기본소득이 공공부조와 같은 선택적 복지에 비해 가난한 사람을 더 잘 도울 수 있다는 논변을 추가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는 있겠다. 실제로 기존의 선택적 복지는 낮은 수급률, 수치심과 낙인 부여 효과, 노동의욕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 저축을 줄이는 효과 등 다양한 한계를 보여 왔다. 자선에 기대는 방식 역시 빈곤을 줄이는 데 태부족임은 역사가 잘 보여준다. 그렇더라도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부와 재물을 내어놓는 방식이 왜 자선이 아니라 조세와 복지급여를 통한 공적 제도화의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¹⁾ 공적 제도화의 방식을 취한다는 전제하에서도 공공부조 등의 다른 제도의 형태가 아니라 왜 기본소득의 형태를 취해야 하는지가 적어도 개인의 동등성이 강조되는 맥락이 아니라 부조의 의무가 강조되는 맥락에서는 신학적으로 논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러한 논증은 기본소득의 정당성이라기보다는 필요성에 기반한 논변이라는 점, 더 구체적으로는 빈곤 개선을 위해 고려될 수 있는 대안이 반드시 현존하는 선택적 복지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비록 현존하지는 않지만 가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음의 소득세, 일자리보장 등과도 비교·경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상당한 추가적인 논증 부담을 지을 수 있다. 특히나 음의 소득세의 경우, 기본소득과 적어도 경제학적으로는 동등한 형태의 음의 소득세가 설계될 수 있으며(Van Parijs and Vanderborght, 2017: 36~37; 이건민, 2022: 46), 빈곤

1) 여기서 비록 반사실적 가정이라는 하지만, 모두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부와 재물을 내어놓는, 곧 가난한 사람에 대한 부조의 의무를 따르는 상황을 상정해보자.

개선 효과 면만 고려되는 맥락에서는 음의 소득세에 비해 기본소득의 장점을 내세우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 다음으로 실제로 그러할 것인지의/그려야 하는지의 문제와는 무관하게, ‘필요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복지’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에 비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 그리고 특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사람들의 직관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Van Oorschot, 2006; Aarøe and Petersen, 2014). 이러한 이유로, 부자나 정치공동체의 가난한 사람에 대한 부조의 의무로부터 기본소득을 끌어내려는 시도는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논하는 시도에 비해 덜 유망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밝히는 방식(금민, 2020b: 1장), 혹은 기본소득의 신학적·기독교적 옹호론을 본격적으로 펼치는 방식(토리, 2020)이 이미 제시된 바 있다. 금민(2020b: 1장)은 토마스 페인의 지적 혁명을 ‘이중적 소유권 이론’ 곧 사적 소유 성립 시 원천적 공유가 사적 소유로 변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 소유’와 ‘인공적 소유’로 이중화된다는 이론으로 정식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페인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공유부대당으로서 기본소득 개념이 등장할 수 있었음을 명확히 밝혔다. 말콤 토리(2020)는 기본소득이 기독교적 사회정책임을 다음과 같이 19가지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① 하나님의 풍성함을 찬양한다. ② 은혜의 행위이다. ③ 우리의 개인성을 인정한다. ④ 하나님이 우리를 동등하게 다루심을 인정한다. ⑤ 가난한 자를 돕는다. ⑥ 심판하지 않는다. ⑦ 끊임없이 용서한다. ⑧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지불받도록 한다. ⑨ 언약적 기초이다. ⑩ 우리를 공동 창조자로 만든다. ⑪ 인간의 원초적 의와 원초적 부패를 이해한다. ⑫ 우리의 상호의존성을 인정한다. ⑬ 더욱 공정한 사회를 가능하게 한다. ⑭ 자유를 촉진한다. ⑮ 가족을 상대화하고 높인다. ⑯ 섬김의 의무를 가능하게 한다. ⑰ 환영이고 친절이다. ⑱ 우리가 가진 것은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부과되지만 한다면 기본소득의 자원 마련을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은 기독교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²⁾ ⑲ 사랑의 행위이다.

둘째, 국민 경제 수준의 생태학적이고 사회적인 소득 분배에 대한 강원돈의 구상과 관련한 것이다. 그는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를 ①자본 축적의 상당한 몫을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확보하는 것, ②전체 잉여가치 중 생태계의 몫을 제하고 남은 부분을 국민경제 차원에서 생산과 소비의 거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배분하는 것(차선책으로는 자본에 귀속된 몫의 일부를 노동의 몫으로 이전하는 소득재분배 과정을 수립하는 것), ③잉여가치에서 노동과 가계에 귀속된 몫을 기본소득과 시장임금의 형태로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으로 큰 틀에서 제시한 점은 탁월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①의 과정은 이를 수행할 법제도와 관련 기구를 창설하고 사회적, 정치적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하더라도, ②와 ③의 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②와 관련하여 보론인 “생태계 보전과 기본소득의 연계를 위한 국민 소득 분배의 모의 실험”에서 “생태계 보전을 위해 공제한 뒤에 남은 국민 소득은 국민 경제의 발전 방향과 성장 속도를 충분히 고려해서 노동 측과 자본 측이 6:4로 나누기로 합의하고”라고 쓰고 있다(261면). 필자의 부족한 상상력으로는, 자본과 노동의 민주적인 파트너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수립된 경우를 상정한다 하더라도 사전적인 계획에 의하여 거시경제 수준에서 노동과 자본의 몫을 어떻게 미리 결정할 수 있을지의 상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 개별 기업 등의 미

2) 여기서 제시된 ⑱은 번역서의 해당 부분 독서를 바탕으로 필자가 새롭게 붙인 것이다. 참고로 ⑱의 원서에서의 제목은 “시민기본 소득 지급하기”이고, 역서에서의 제목은 “지급에 적합한 세원”이었다.

시적인 경제 주체 수준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분배 비율을 사전적으로 결정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리라 생각되고, 그러므로 이것을 집계(agggregation)했을 때의 총 노동과 총 자본의 몫 역시 미리 결정되기란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물론 여러 번의 시행착오(trial and error)와 실행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 과정을 거치면서 총 노동과 총 자본의 몫이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리라 생각되고(예측이 정확해질수록, 범위를 더 좁힐 수 있을 것이다), 저자의 뜻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짐작할 뿐이다. ②에서와 마찬가지로, 필자의 부족한 상상력으로는, ③의 경우도 기본소득과 시장임금의 몫을 사전적으로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리라 판단한다. 시장임금 자체가 기본소득의 지급 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영향을 받는 정도가 특정 시공간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②와 ③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되는 것인지에 관한 저자의 고견을 듣고 싶다.

셋째, 좌파 기본소득 모델과 정통파 기본소득 모델의 구분을 바탕으로 고정액수 제시형 기본소득제의 오류를 지적하고 변동형 기본소득제를 제안한 전강수의 논의와 관련한 것이다. “기본소득의 정당한 재원은 무엇인가?”, “기본소득의 가능한 재원들 중에서 정당성 혹은 우선순위 면에서 위계(hierarchy)가 존재하는가?”는 사실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기본소득의 정당한 재원은 존재한다는 입장, 혹은 최소한 기본소득의 재원들로 거론되는 후보들 내에서 정당성 차원에서 위계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당한 재원을 발굴한 것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1/n로 나누는 것’이 기본소득의 본래 정의에 부합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기본소득 및 기본소득 재원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정책적인 효과를 낳거나 기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재원의 정당성 측면을 고려했을 때, 기본소득 연계형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 연계형 탄소세가 다른 정책보다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고정액수 제시형 기본소득제에서 요구되는 일반회계로부터 기본소득 특별회계로의 전입, 기본소득 특별회계 부담의 일시차입이 불필요해진다는 것이다(안효상, 노호창, 서정희, 이건민, 2021: 25, 30). 셋째, 고정액수 제시형 기본소득에 비해 이중적 의미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다른 제도와의 비교, 경합 문제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본소득의 지급액수를 생계유지에 필요한 수준 또는 그것의 일정 비율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크게 네 가지 점에서 저자와는 견해를 달리한다. 첫째, 토마스 페인과 헨리 조지를 저자가 말하는 ‘정통파 기본소득 모델’이라는 하나의 이름 안에 묶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토마스 페인은 산업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이 막 태동하던 시기에 살았기에, 아무래도 당대의 변화가 갖는 역사적 의미를 세밀하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웠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그가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토지’에만 주목했던 것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의 ‘이중적 소유권 이론’은 토지를 비롯한 자연자원을 넘어서 빅데이터, 그리고 일상적인 경제활동의 소산인 소득, 재산, 소비까지도 확장하여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토마스 페인을 지공주의에 입각한 ‘정통파 기본소득 모델’로 범주화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

둘째, 만약 기본소득의 정당성이 ‘원천적 공유’에서 곧바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소유’와 ‘인공적 소유’가 개념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양자가 완전히 서로 분리될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가치 창출과 증식이 사회적 협동의 결과라는 사실에서 찾아진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금민, 2020b: 1장; 이건

민, 2020: 84), 기본소득의 정당한 재원이 토지를 비롯한 자연자원, 환경, 특권 독점으로 인한 이익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금민(2020a; 2020b)은 기본소득을 자연적, 사회적 공유부로부터 얻은 경제적 수익을 평등하게 배당하자는 아이디어로 정식화한 바 있다. 여기서 공유부 수익은 “원래 모든 사람에게 속한 자연적 공유자산의 수익이나 또는 지식, 정보, 빅데이터 등과 같은 인공적 공유자산의 수익처럼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따질 수 없고 어떤 특정인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수익”을 뜻한다. 또한 우리는 사회 내 및 사회 간 소득 차이의 주 요인으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접근을 지목하고 이것의 대부분은 외부성의 산물이라고 본 허버트 사이먼(Simon, 2000)의 주장을 떠올려볼 수도 있을 것이다. Simon(2000)은 이러한 외부성이 선진국에서 소득의 90% 이상을 창출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전체 사회 구성원이 공동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90% 혹은 70% 비례소득세를 바탕으로 한 기본소득 지급과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들의 운영이 정당화되는 것이다(Simon, 2000).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토지보유세, 탄소세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세, 소득세 등도 기본소득의 정당한 재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저자가 지공주의에 입각한 기본소득 옹호론을 ‘정통파 기본소득 모델’로 명명한 것도 이론의 여지가 많으며, 기본소득의 다양한 가능한 재원들 내에서 정당성을 기준으로 위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어떠한 형태의 기본소득이 현실에서 먼저 도입되어야 할지는 재원의 정당성 여부 혹은 위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의 시급성, 정치적 지지와 실현가능성 등의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변동형 기본소득제가 고정액수 제시형 기본소득제에 비해서 제도의 도입과 운용 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예측가능한 유의미한 액수의 기본소득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장점을 무화한다는 점에서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변동형 기본소득제에서는 일반회계로부터 기본소득 특별회계로의 전입이나 기본소득 특별회계 부담의 일시차입이 불필요하고, 기본소득의 지급액수를 미리 제시할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국토보유세나 탄소세를 재원으로 한 기본소득 지급은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지급될 수 있는 기본소득 액수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으며 기본소득 액수의 변동성도 클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자체가 교정과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세금의 목적과 기대효과에 맞게 토지가격이 하향안정화되거나 탄소 사용이 크게 급감하게 될 경우, 기본소득 지급액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하거나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 기본소득이 예측가능한 유의미한 액수가 될 때에만 사람들이 ‘빈곤의 덫’, ‘불안정의 덫’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인, 공동체, 국가 수준에서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들을 산출할 수 있음을 고려해볼 때(Van Parijs and Vanderborght, 2017; 스탠딩, 2018; 금민, 2020b; 정상훈, 2020), 제도의 도입과 운용 면에서의 상대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정액수 제시형 기본소득제가 변동형 기본소득제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넷째, 변동형 기본소득제를 제안한다고 해서 다른 제도와 비교, 경합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예컨대 국토보유세나 탄소세를 재원으로 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 제안에 대해, 국토보유세나 탄소세로 확보한 세수의 전부 혹은 일부를 기본소득이 아니라 다른 방식, 곧 공공임대주택 건설이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인프라 투자 등에 쓰자는 반론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것이 사실이다(장

석준, 2019; 홍대선, 2021). 모든 사람이 기본소득 재원의 정당성, 또는 특정 재원으로 마련된 세수를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저자와 동일한 의견을 갖지 않는 이상, ‘정책의 가성비’ 등을 따지면서 기본소득을 다른 제도와 비교, 경합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전강수의 진지하고도 중요한 문제제기와 관련해서는, 이 글에서의 논의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좀 더 치열하고도 정치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에 관한 신학과 사회과학의 진지한 대화의 출발점이 된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이 책은 기본소득에 관한 신학적 옹호론, 특히나 기독교적 옹호론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필독서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금민(2020a). 기본소득 재정원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월례 쟁점토론회 (8) “기본소득의 재정원리와 시민소득세” 발표문 초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금민(2020b).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지금 바로 기본소득』. 서울: 동아시아.

스탠딩, 가이(2018). 『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안효상 역. 파주: 창비.

안효상, 노호창, 서정희, 이건민(2021). 기본소득법 발의, 기본소득을 향한 의미 있는 첫발을 떼다. 계간 《기본소득》 7, 22-36.

이건민(2020). 지금 바로 기본소득의 형태로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계간 《기본소득》 6, 83-89.

이건민(2022). 기본소득과 음의 소득세는 어떻게 다른가. 계간 《기본소득》 11, 44-51.

장석준(2019). 농지개혁 70주년, 이제 ‘제2의 토지개혁’이다 - [장석준 칼럼] ‘무소속’이 성공시킨 1949년 농지개혁. 《프레시안》. [3월 12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32134>

정상훈(2020). 『동네의사와 기본소득: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김포: 루아크.

토리, 말콤(2020). 『시민기본소득: 기독교적 사회정책』. 박기주 역. 서울: 도서출판 해남.

홍대선(2021). “탄소세 거둬 전국민에 배당” vs “상품값 올라 저소득층 피해”. 《한겨레》. [6월 22일]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0346.html

Aarøe, Lene and Michael Bang Petersen (2014). Crowding Out Culture: Scandinavians and Americans Agree on Social Welfare in the Face of Deservingness Cues. *The Journal of Politics* 76(3), 684-697.

Simon, Herbert A. (2000). A Basic Income for All: UBI and the Flat Tax. *Boston Review: A Political and Literary Forum*. [1 October 2000]

Van der Veen, Robert J. and Philippe Van Parijs (1986). A Capitalist Road to Communism. *Theory and Society* 15(5), 635-655.

Van der Veen, Robert J. and Philippe Van Parijs (2006). A Capitalist Road to Communism. *Basic Income Studies* 1(1), Article 6. [Reprint]

Van Oorschot, Wim (2006). Making the Difference in Social Europe: Deservingness Perceptions among Citizens of European Welfare Stat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6(1), 23-42.

Van Parijs, Philippe and Yannick Vanderborght (2017). *Basic Income: A Radical Proposal for a Free Society and a Sane Econom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